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76,797,569	17,303,927
일반회계	517,670,073	15,530,102
특별회계	59,127,496	1,773,825
기타특별회계	59,127,496	1,773,8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91,968	110,7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553,873	466,616
수질개선특별회계	10,199,575	305,9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6,805	15,204
주차장특별회계	65,050	1,95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786,935	773,608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62,309	7,8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300	2,31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57,628	31,729
행복주택특별회계	1,616,816	48,504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309,237	9,2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